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Q&A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Q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시행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입니다.

또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자에게 학업의 중단없이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경로를 추가하여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1.5.19. 공포)되었습니다.

Q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인가요?

A. (산업체 경력있는)학사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입학 후 재직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학생이 '성인 재직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문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직접 현장에 근무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이론과 접목하여 해결하기를 원하고, 심화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인 학생들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해당 대학의 동일 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입니다. 2~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현장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실제적 지식과 현장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기술습득, 일상 업무 관리능력을 습득한 전문학사 졸업자가 계속하여 이론과 원리를 겸비한 고급지식과 추상적인 문제를 창조적인 해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인지적 기술습득 및 관리감독을 하는 실행능력 습득을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Q3.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직장인의 Work-to-School(일터에서 학교로)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직장인 또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관련

모집 정원

Q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을 정원 외로 관리함에 따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모집 정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학 전체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산업체 경력없는 과정과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모두 포함)는 당해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합니다. 단, 1개의 모집단위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예시, 간호과만 있는 간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그 대학의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예시>

대학전체 입학정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총학생수	전문학사 학과(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별 모집정원		
			사례 1	사례 2	사례3
1,000명	200명 이내	A(50명)	50명	20명	50명
		B(60명)	60명	20명	30명
		C(100명)	50명	100명	120명
		⋮			
			○	○	×

※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는 해당연도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전체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였으나, 사례3의 경우 C학과의 모집정원이 100명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에 위배된 것임

Q6. 모집정원 산정 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정원에는 정원 외 학생도 포함되나요?

A. 모집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정원 내 입학정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7.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의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공동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의 모집정원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2개 이상)의 입학정원을 합한 수의 100% 이내 이어야 합니다.

Q8.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최저 기준이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 산정 시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Q9. 기존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은 별도로 산정하나요?

A. 두 개의 과정은 별도의 과정이지만 하나의 모집단위에 개설되는 과정이므로, 두 과정의 모집정원을 합하여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년제 과정과 2년제 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두 과정의 모집정원을 합하여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1>

학과명	전문학사과정 입학 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가능 여부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과	40명	40명	40명	×
		20명	20명	○
		30명	10명	○

<사례2>

학과명	전문학사과정 입학 정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가능 여부
		2년과정	1년과정	
○○과	40명	40명	40명	×
		20명	20명	○
		30명	10명	○

Q10.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이 연도별로 변동할 경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도 함께 변동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가 받을 당시의 정원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A.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도 함께 변동합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도 함께 감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인가받을 당시의 모집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집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등의 인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11. 교육부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이후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모집정원의 확대 또는 감축이 가능한가요?

A. 인가 받을 당시의 모집정원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교육 여건도 개선되어야 하므로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등의 인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모집정원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는 달리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감축 후에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과정 개설

Q12.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에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 학위과정(4년제 간호학과 포함)의 모집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Q13.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상이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상이한 성격의 전공심화과정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Q1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명칭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명칭과 같도록 해야 하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명칭은 아래의 4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원칙적으로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학과(학부 또는 계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을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열 내의 전공 단위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명칭을 학과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명칭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학과 명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다만, '○○과'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을 '**○○학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③ 계열 내의 전공 단위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공 명칭을 그대로 전공심화과정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에는 없는 새로운 전공명칭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전문학사 학위과정 ○○계열 ★★전공 ⇒ 전공심화과정 ★★(학)과)
- ④ 만약 두 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서로 연합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다면 두 개 학과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결정합니다.
 (예: 전문학사 학위과정 기계과+기계설비과 ⇒ 전공심화과정 기계공학과)

☞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가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15. 2020학년도 신설 예정 학과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단계 교육여건 평가(Pass/Fail)의 신청 최소기준에 2019.4.1. 실적 기준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설 예정 학과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Pass 될 수 없습니다.

Q16. 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나요, 만약 개설이 가능하다면 전공심화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A.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 시 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나, 전공심화과정은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자격증 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 분야,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해당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17. 두 개 학과가 공동과정을 개설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 계열의 학과인 경우라도 가능한가요?

A. 서로 다른 계열이라 하더라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공동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2개의 학과를 나열하여 1개의 학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설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18. 한 모집단위 안에 여러 개의 전공이 나뉘어 있는 경우, 몇 개의 전공만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부) 내의 일부 전공에만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교사확보율·교원확보율 등의 정량평가 기준은 해당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Q19.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면서 모집단위 내에 새로운 세부전공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면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에는 없지만 관련성이 있는 세부 전공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인가 신청을 할 당시에 신설하고자 하는 전공 및 해당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Q20.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동시에 인가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학생들을 분리 입학시킬 수 있나요?

A. 2개 과정을 동시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별도 과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한 개의 모집단위에서 2개 과정을 동시에 개설한다 하더라도 각 과정은 별도의 과정이므로 학생도 분리하여 입학시켜야 합니다.

Q21.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 2개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연한과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개설·운영하여야 합니다.

Q22. 기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인가 받은 학과를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반대의 경우도 포함)

A.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수업연한 등 운영 현황이 동일한 경우 교원확보율·교사 확보율 등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에 전환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3. (학과 명칭은 전문학사 학위명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 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명칭을 변경하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지?

A. 모집단위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기초로 하기 있기 때문에 전문학사 학위과정 명칭이 변경된다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명칭도 변경되어야 합니다(변경된 내용은 교육부에 보고)

Q24. 인가받은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학과 분리 또는 통합되었을 경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재인가 받아야 하나요?

A.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학과 분리 또는 통합되었을 경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폐과 되지 않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 재인가 받지 않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원확보율

Q25.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A. 학교전체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경우 편제정원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학년별 입학정원을 합산한 수를 의미하며, 모집단위별 편제정원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편제 완성 후에는 전공심화과정 편제정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매년 4.1기준으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0학년도 인가 시

구분	(산업체 경력있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교전체	전문학사 편제정원 (2020.4.1기준)	전문학사 편제정원 (2020.4.1. 기준)
모집단위	전문학사 편제정원+(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 (2020.4.1 기준)	전문학사 편제정원 +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 (2020.4.1. 기준)
기타		※ 인가신청 시 : 2019.4.1 기준 - 대학 전체 및 모집단위 :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편제정원

Q26.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교양교원이 해당학과 강의를 담당할 경우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A. 모집단위별 해당학과 강의를 담당하더라도 해당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교양 교원이 모집단위별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원일 경우에만 전임 또는 겸임, 초빙 교수 여부에 따라 모집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또는 전체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모집단위별 해당학과에 소속된 교원은 반드시 해당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Q27.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경우,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연합한 학과를 1개의 모집단위로 보아 계산하나요, 아니면 학과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연합한 학과를 1개의 모집단위로 보아 교원확보율을 계산합니다.

교사확보율

Q28. 주·야간 교사확보율을 별도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주·야간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것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주간으로 개설할 경우 주간학생 기준 교사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야간학생 기준 교사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29. 교사확보율 산정(2020.4.1 기준) 시에도 학생 수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편제정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편제정원(학년별 모집정원의 합)을 포함하여 교사확보율을 산정합니다.

Q3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아 2020학년도에 동 과정을 설치하였으나, 2020년 4월1일 기준으로 설치 요건(교원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인가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 이행 시에는 미 이행 정도에 따라 총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가받은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매년 4.1일 기준으로 교사 및 교원확보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가 심사

Q31. 전공심화과정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는 대학이 있나요?

A. 2019학년도 기본계획에서는 행정제재 대학,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불인증 또는 미신청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부정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처분건 중 입시학사 비위의 정도, 기관평가 불인증(미신청) 주요사유, 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를 인가의 타당성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20학년도 기본계획 참조)

인가 이후 사후관리

Q32. 202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후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의 적격 요건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매년 4월 1일 기준 정보공시를 바탕으로 교육부 평가 위탁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전체와 모집단위에 대한 교육여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Q33.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공학교육인증원이나 간호평가원의 프로그램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공학과 간호학과 외 교육프로그램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A. 교육프로그램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인증을 받은 모집단위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차평가를 면제받았으나, 2020년부터 도입되는 운영진단은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Q34. 202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후 모집한 인원이 인가받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동 과정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실제 등록된 학생이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모집 시 정원미달(구체적 정원미달 인원 제시)에 대한 미개설이 안내된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련 과정 중 휴학이나 복학에 대해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Q35. 학과 명칭 변경, 정원 조정, 신규 학과 개설, 학과 폐지 등을 위해서 해마다 인가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하나요?

A. 신규 학과에 새로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하여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폐지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되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비율, 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 등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에 정원 증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6. 2년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간 운영하고 있던 중 학과가 3년제로 개편되었다면 전공심화과정도 1년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1년제 전공심화과정과 2년제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관련

입학 사정

Q37. 입학자격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일반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자도 포함되나요?

A. 일반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Q38. 관련 분야 재직 경력 기간 1년 이상은 경력을 총 합산한 기간인가요? 근속연수인가요?

A. 재직 경력 "1년 이상"은 근속 연수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의 재직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Q39. 재직경력 "1년 이상" 산정 시 외국에서 근무한 기간도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재직경력 입증서류는 국내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적격여부는 대학 내 자체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4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자격 요건으로 산업체 경력에 대한 기준 시점은?

A. 전문학사과정 입학 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 전(학칙에서 정하는 입학일 전)까지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41.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영세 사업자도 재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할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영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이 때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장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재직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42.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대회 출품, 작품발표 등에 대한 산업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1.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산업체 경력의 인정범위는 각 활동 내역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력 인정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하고 입학사정 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특정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대회 공고일로부터 제출일 기간 중에 작품 제작 활동에 소요된 기간,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기간 중 실제 공연활동에 참여하는 기간, 영화출연의 경우에는 작품 제작기간 중 실제로 출연을 위해 활동한 기간 등)

A2. 창작활동에 대한 산업체 경력 인정 기간 및 자격은 전문학사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창작활동에 한하여 인정되며, 창작활동과 관련된 소득증빙, 입상내역 또는 작품창작 활동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Q43.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한 자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A.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라도, 장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재직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영농인, 어업인 등 재직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재직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영농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 어업인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어업 인·허가 증명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어업인 후계자 증명서’ 등 재직증명서에 상응하는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Q44.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산업체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A.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재직 경력이 있는 자”이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경력이 필요합니다.

Q45. 관련 산업체 재직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공과 산업체간 관련성’보다는 ‘전공과 담당 직무분야 간 관련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내에 구성된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Q4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전문대학 재학 당시 교과목 이수 증빙서류를 입학서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 입학 사정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재학 당시의 전공 및 수강 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입학서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47. 동일 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 분야를 판단할 때, 계열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동일 계열 학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교육부장관이 정한 ‘동일 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 분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Q48. 기준표를 확인함에 있어 학과가 우선인가요? 분야가 우선인가요? (분야가 서로 달라도 학과군이 같으면 인정될 수 있나요?)

A. 학교별로 학과의 계열(분야) 구분이 상이하므로, 학과군이 같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Q49.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나요?

A.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기존 전공심화과정은 서로 별도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요구,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과목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0.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직업교육 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는 수준 및 내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간 교차 학점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Q5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을 이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Q52.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A. 전공심화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3. 주말반 수업운영이 가능한가요?

A. 수업운영은 학칙에 따라 주말에도 가능 하지만, 전체 수업을 주말반으로 운영하는 등 학습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운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Q54. 원격 수업이 가능한가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직무 심화교육으로 출석 수업을 원칙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달성 등 운영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하되, 실험·실습·실기 등이 요구되는 교과목의 원격수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11312호, 2018.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이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학점은행제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표준교육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56. 교양 학점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나요?

A.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general skill) 함양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인정 가능하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Q57. 자격증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별도로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8.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 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59.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외 인턴십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Q60.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및 최소 학점은 얼마인가요?

A.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및 최소학점은 학교가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반드시 학칙에 정하여야 합니다.

Q6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주간과 야간에 동시에 개설한 경우,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의 교과목을 교차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주·야간 과정 간 학점 교차 인정은 학교가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Q62. 당초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 시 편성했던 교육과정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A. 교육과정 변경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수요자의 설문 조사 등 교육과정 편성절차를 거쳐, 전공심화과정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6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Q64. 전공심화과정을 9월 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 운영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운영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3월 학기부터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9월 학기부터 입학할 수 있으며, 이때 순수외국인은 당초 인가된 모집정원과 별도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Q65.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80학점(2년제) 또는 120학점(3년제)을 초과할 경우 실제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80학점(2년제 졸업자), 120학점(3년제 졸업자) 이내에서 학교 자율로 인정하면 됩니다.

Q66. 전문학사학위 취득 시에 전공한 학과가 전공심화과정의 전공과 서로 다르지만 학과 간 관련성이 인정되어 입학한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해당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까지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공심화과정의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학점만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A.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전공 관련학점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학자체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Q67.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계속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 학사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심화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전문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만 학점으로 인정되며, 학사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장소

Q6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본교가 아닌 타 지역의 학습관에서 할 수 있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교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하며, 본교 외부의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Q69. 대학이 소재한 지역 내 별도 건물(교지 외부)에 실습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실습실도 학습장에 포함되므로, 본교 외부의 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과·편입학 등

Q70.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A.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 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 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Q71.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전공심화과정이 폐지된 경우 다른 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으나,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한 대학의 학칙 등 경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72.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Q73.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경우, 2년차 과정을 일반대학의 4학년으로 보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과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및 운영 등에 있어 차별화되는 별도의 과정이므로 양자 간 편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또는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해 전공심화과정 간 편입을 원하는 자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Q7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2년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력을 대졸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A. 학력 부분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하며, 학위명을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로 표기 가능합니다.

운영 체제

Q75.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최소 운영 위원 수가 있나요?

A.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Q76.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산업체 인사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체 겸임 교수도 인정되나요?

A.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중 50% 이상을 산업체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바, 산업체 인사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외부 인사를 의미합니다. 이 때 산업체 겸임 교수도 산업체 인사로 인정됩니다.

Q77. 동 과정의 운영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나요?

A.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평생교육과정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대학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업료

Q78. 전공심화과정 수업료를 학기별로 책정하지 않고 학점 당 책정할 수 있나요?

A.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기 타

Q79.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입학이 가능한지요?

A.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국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하는 교육환경 하에서 동 과정에 외국인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과정이 국내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적 취지, 정상적인 학사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학자격 요건은 국내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어학요건 등 일정자격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Q80.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영문 표현은?

A. 그 동안 전문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부터 몇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향후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고려하여 「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라고 하였습니다.